

#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 1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 및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부합되도록 ‘농지개량시설’ 명칭을 ‘농업생산기반시설’로 개정(제명, 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, 안 제5조)
- 나.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(안 제1조)
- 다.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3조 및 제6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,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1조 및 제32조
-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5년 7월 29일 ~ 8월 12일(15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해당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부서협의 기간 : 2015년 7월 29일 ~ 8월 12일(15일간)
- 나. 협의내용
  - 성별영향분석평가(사회복지과) : 원안동의

## 9. 기타 참고사항 : 덧붙임

- 하남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

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친환경농업과

## 하남시 농지개발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농지개발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하남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사용료)**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
2.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금액

**제4조(사용료 징수)**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.

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.

**제5조(사용료 납부기간)**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용기간)** 목적외 사용기간은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다.

**제7조(사용료 면제)**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서명		농업지원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농업지원과장 박성래
	팀장 직위·성명	농업정책팀장 최근수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희덕 (790-5441)

### 〈 관계법령 발췌서 〉

## 농어촌정비법

### 제23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)

-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(他人)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
-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·기간 및 범위,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농어촌정비법 시행령

**제31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)**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6.>

1. 목적 외 사용의 사유
2.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
3. 목적 외 사용의 내용·방법 및 기간
4.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
5.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

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(제4호는 제외한다)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6., 2012.5.7.>

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12.6.>

1.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
2.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
-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.

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.

1.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
  - 가. 공용·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: 10년
  - 나.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: 3년
2.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: 5년
3.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: 3년

**제32조(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)**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

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6., 2013.3.23.>

1.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: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2.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·포획·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: 생산물 시가(時價)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: 그 토지의 공시지가(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)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가. 용수로·배수로, 농로 등을 통행로·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나.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4.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: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·도로 등의 건설·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비
2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·보수를 위한 비용
3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

## 국유재산법

제33조(사용료의 조정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

으로 본다)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·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30., 2012.12.18.>

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